

1. 개정 이유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국가보훈등록증(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등록증 등

(안 제17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제4항 신설)

-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국가보훈등록증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함.(안 제17조제1항)
-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을 국가보훈등록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제2항 신설)
-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기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안 제17조의2 신설)

-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8호 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내보이도록 함.
-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함.
- 재발급된 국가보훈등록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함.(분실한 경우는 제외)

다.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 등(안 제17조의3 신설)

-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받으려는 사람을 포함)이 원하는 경우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같게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공카드 30만장 구입예산 15억원 확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보훈관계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상자 포함)

다. 합의 : 관계기관 협의 이전임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6의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포함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말하고, 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

2. 별표 7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국가보

훈등록증에 포함할 수 있다.

③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⑤ 영 제101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각각 별지 제5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5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8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사진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영 제101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①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국가보훈등록증 등) ①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6의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포함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말하고, 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 2. 별표 7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
② 영 제101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② 국가보훈처장은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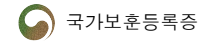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각각 별지 제5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5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t) 칩을 국가보훈등록증에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③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사진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영 제101조의3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영 제101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각각 별지 제5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5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발급된 국가보훈등록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17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신 설>	제17조의3(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제17조제1항제1호 관련)

(앞면)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뒷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 이 증으로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 국공립 고궁·능원, 국공립 공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감면: 국공립 공연장(대관 공연은 제외), 국공립 체육시설

QR

세부내용
QR참조

- ※ 주소, 신상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보훈상담센터 : ☎ 1577-0606

- 주) 1. 앞면 상단의 “(국가보훈대상자 구분)”에는 ① 독립유공자, ② 독립유공자유족, ③ 국가유공자, ④국가유공자유족으로 기재한다.
2. 앞면 하단의 “(경합 등록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또는 “(대상구분)”에 기재되는 보훈등록 사항 이외 경합 등록된 내용을 기재한다.
- 경합 등록사항이 없는 경우, 기재되지 않는다.
3. 고궁·공원 등 감면 대상 국공립 시설물 및 감면비율의 세부내용은 뒷면 Q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국가보훈등록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미세문자, 색변환 잉크, 형광, 레인보우인쇄, 선화인쇄 등의 디자인 기술을 적용한다.
5. 제17조제2항에 따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이 포함된 경우에는 앞면 좌측 하단에 기호(📡)를 표시한다.

86mm×54mm[폴리염화비닐(PVC) 980.4g/m²]

에는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에 기
재되는 사항은 제17조제1항제1
호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기
재사항과 같다

제17조의2 (생략)

제17조의4 (현행 제17조의2와 같
음)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㉞ 1. 상단의 “(국가보훈대상자 구분)”에는 ① 독립유공자, ② 독립유공자유족, ③ 국가유공자, ④국가유공자유족으로 기재합니다.

2. 하단의 “(경합 등록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또는 “(대상구분)” 에 기재되는 보훈등록 사항 이외 경합 등록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경합 등록사항이 없는 경우, 기재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신청 시 스마트폰 번호 필수 기재(단, 신청인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어야함)		
신청 구분	[] 발급 []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	[] 희망 [] 불희망
신청 사유	[] 분실(분실일자:) [] 훼손(훼손일자:) [] 증 기재내용 변경(대상구분, 보훈번호, 상이등급, 성명, 생년월일 등 변경) [] 기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사진 1매(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사진)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신분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신청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

연번	관리 (지)청	접수 번호	발급 일자	발급대상자				증구분	신청구분	수령인	모바일증		비고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발급여부	발급일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